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달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98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6.

발 의 자 : 이달희 · 고동진 · 서천호
정희용 · 박대출 · 김은혜
김 건 · 김상훈 · 김도읍
강선영 · 주호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순직한 사람의 유족을 ‘순직군경’ 또는 ‘재해사망군경’의 유족으로 보고, 공상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 ‘공상군경’ 또는 ‘재해부상군경’과 그 가족으로 보고 있음.

그런데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상의 ‘순직군경 · 재해사망군경 · 공상군경 · 재해부상군경’의 범위에 군인 · 경찰 ·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, 현행 법령 전반에 관련 용어가 ‘군경’으로만 통용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위상 정립을 위해 정확한 용어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관련 용어를 ‘순직군경소방 · 재해사망군경소방 · 공상군경소방

· 재해부상군경소방'으로 개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
공무원을 위상을 정립하고자 함(안 제75조제3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달회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3981호) 및 「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의안번호 제1398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제3항 중 “순직군경의”를 “순직군경소방의”로, “재해사망군경의”를 “재해사망군경소방의”로, “공상군경과”를 “공상군경소방과”로, “재해부상군경과”를 “재해부상군경소방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5조(보상 및 치료) ① · ② (생략)	제75조(보상 및 치료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의 경우 순직한 사람의 유족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<u>순직군경의 유족</u> 또는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<u>재해사망군경의 유족</u> 으로 보고, 공상(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)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(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) 및 그 가족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<u>공상군경과 그 가족</u> 또는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<u>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</u> 으로 본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순직군경</u> <u>소방의</u> ----- ----- ----- <u>재해사망</u> <u>군경소방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공상군경소방</u> <u>과</u> ----- ----- ----- <u>재해부상</u> <u>군경소방과</u> -----.
④ ~ ⑥ (생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